

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‘11년 4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생활제품안전과장 정의식(509-7996), 양재원 주무관(509-7246)		

새집증후군 줄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지속관리

- 기술표준원, 가구의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가져 -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구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현행 안전 기준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구의 안전·품질 표시기준을 개정고시(‘11.3.28일)하였다.
 - 가구는 제조 공정에서 목재 등의 방부처리 및 접착,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폼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. 이에 기술표준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두통, 아토피 등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였다.
 - *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
- 기술표준원은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각각 병행적용하여 양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 - 향후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수 있는 데시케이터법과는 달리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챔버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,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된 유해물질 시험방법 및 기준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.

- 한편 기술표준원은 업계의 가구의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‘11.4.18(월) 16:00부터 기술표준원 1동 중강당(1층)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<붙임 1: 가구의 안전·품질 표시제도>

<붙임 2: 가구의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요>

<붙임 1: 가구의 안전·품질표시제도>

1. 제도의 목적

- 관련 법률 :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(이하 “품공법”)
- 목적 :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위해,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
- 방법 : 공산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차등화 하여 관리

<공산품 안전관리제도>



2. 가구의 안전·품질표시 제도

① 가구는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(품공법 제2조)

-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가구의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, 판매전에 KC마크를 제품에 표시

②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기준

- '10년 7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가구는 다음의 유해물질 <표 1. 안전요건> 또는 <표 2. 안전요건>을 만족하여야 함

<표 1. 유해물질 안전요건>

시험항목	허용기준치(단위: mg/L)	비고
폼알데하이드 방출량	평균값이 1.5 이하	데시케이터법

* KS규격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SE0(0.3mg/L이하), E0(0.3~0.5mg/L), E1(0.5~1.5mg/L), E2(1.5mg/L 초과)로 구분

<표 2. 유해물질 안전요건>

시험항목	허용기준치(단위: mg/m ² ·h)	비고
폼알데하이드 방출량	0.12 이하	소형챔버법
톨루엔 방출량	0.080 이하	
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	4 이하	

③ 가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

○ 안전·품질표시(KC마크 포함)

- 가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에 품명, 외형치수, 안전요건 합부(유해물질), 제조연월, 제조자명 등을 표시

<책상 및 테이블의 안전·품질표시 예>
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	
1. KC 마크(오른쪽 마크) 2. 품 명 3. 외형치수(mm) : 길이 × 나비 × 높이 4. 구조부재 5. 표면가공 6. 안전요건 합부(유해물질) 7. 제조연월 8. 제조자명 9.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 10. 주소 및 전화번호(지역번호 포함) 11. 제조국명 12. 취급상 주의사항	

〈붙임 2: 가구의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요〉

□ 목 적

-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을 업체에 널리 알리고,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

□ 설명회 개요

- 주최 : 기술표준원
 - * 후원: 한국제품안전협회, 가구산업협회, 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, 씽크공업협동조합
- 일시 : '11. 4. 18(월) 16:00
- 장소 : 기술표준원 1동 중강당(1층)
- 주요 내용 : 가구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안전·품질표시사항

□ 세부 프로그램

시 간	주 제	발표
16:00~16:05 (5')	·인사말	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
16:05~16:25(20')	·가구의 안전관리제도	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
16:25~16:45(20')	·목재(보드)의 친환경성 제고방안	동화기업
16:45~17:05(20')	·KC마크의 마케팅 활용효과	한샘
17:05~17:20(15')	·불법·불량 제품 단속 계획	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